

제227회 영등포구의회  
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 
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12. 7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 
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91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스포츠클라이밍장을 구민들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, 공공체육시설 경영합리화 유도로 주민복지 증진 및 경영수익성을 창출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및 세부 내역

시 설 명	소 재 지	시 설 규 모		시설내역	운영인력
		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	
영등포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	도신로15길 11	공공 체육시설	492.3 (지상3층)	암벽장 사무실 관리실 등	4명 (사무직1, 안전관리1, 현업직1, 강사1)

## 나.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기간: 3년(2021. 3. ~ 2024. 2. 예정)
- 위탁사무의 내용
  - 스포츠클라이밍장 내·외부 시설의 유지 및 관리
  -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강습·일반 이용요금 징수
  - 시설 행정 제반 업무
  - 시설 관리·운영에 따른 민·형사 소송업무 및 민원처리 사항
  -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의 수립 및 시행
- 소요 예산: 연간 182,421천원(전액 구비)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산 출 내 역
계	182,421	
인건비	140,421	시설관리, 안전관리, 미화, 종목강사
시설관리비	12,800	안전장비 개량비, 등반시설 관리 등
공공요금	10,000	전화, 인터넷 등 공공요금 및 제세
홍보비	1,000	프로그램 홍보비
자산취득비	8,200	소프트웨어 구축 등
기타운영비	10,000	사무용품, 응급물품 등

- 모집방법: 공개모집

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‘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’을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있는 체육분야 전문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-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고, 제10조제2항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본 동의안의 위탁 기간을 “3년”으로 하는 것은 타당함.

### ○ 검토결과

-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은 주민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상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

-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, 사업능력, 재정능력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,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2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-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3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6조(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(이하 "시설관리공단"이라 한다)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적용하나, 제3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.

### 4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